사단법인 한국화학산업연구회 정관

2015년 7월 2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화학산업연구회(Korea Chemical Industry Research Group (KCIRG), 이하 "연구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회는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발전과 관련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 연구회의 사무소는 연구회 창립시 서울시에 둔다. 단 회장단의 거주지에 따라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 발표회, 강연회, 강습회의 개최
- (2) 학술지 및 도서의 출판
- (3) 연구 및 업적에 대한 시상
- (4) 화학산업관련 네트워크 구축
- (5) 국제 교류
- (6) 광고 등 홍보 사업
- (7)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의 종류)

본 연구회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하며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된다.

제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연구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규정에 정한 의무를 지며, 연구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 권리를 갖는다.

제3조 (회원의 탈퇴)

본 연구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징계)

회원의 제명 등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징계 절차와 내용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제1조 (임원의 종류)

본 연구회에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의 임원을 둔다. 이사는 5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감사는 2인이하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만료시까지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직 임원이 직무를 계속하며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도록 한다.

제3조 (임원의 결원 시 충원)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장 및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제7조 (총무의 직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재무를 담당한다.

제8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연구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과 이사회, 총회 및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또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면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한다.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4장 총회

제1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임원 선출, 정관 및 규정 변경,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및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2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조 (의결권)

회장 및 회원은 당사자 간의 법률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 재산 및 금전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와 본 연구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

제5장 이사회

제1조 (이사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제 위원장은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이사는 회장의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2조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업무 집행, 사업계획 운영, 예산과 결산서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전자 투표도 가능하다.

제4조 (이사회 소집 및 의장)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장 운영위원회 및 제 위원회

제1조 (운영위원회)

본 연구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본 운영위원회의 각종 의결은 이메일 등 전자 투표로 할 수 있다.

제2조 (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목적 달성과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해당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의 규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1조 (수익금) 본 연구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 충당, 사업 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광고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2조 (채무 등)

본 연구회는 연구회에 구속력이 될 수 있는 채무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예산 및 결산 작성)

본 연구회의 사업 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당해연도 2월까지 편성하고, 당해 년도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차년도 2월까지 작성한다.

제3조 (회계 연도)

본 연구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8장 네트위크

제1조 (네트워크) 본 연구회는 사업 및 관련 개인 및 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1조 (정관 개정)

본 연구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 얻어야 한다.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연구회의 해산)

본 연구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회가 해산될 경우, 그후 남아있는 연구회의 자산은 본 연구회와 관련된 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 단체에 전달한다.

제3조 (설립 발기인 및 임원의 임기)

1. 본 연구회 설립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 도춘호 (인)

발기인 이대수 (인)

발기인 허정림 (인)

발기인 김순식 (인)

발기인 김상헌 (인)

발기인 박현길 (인)

발기인 김학길 (인)

2. 본 연구회 설립 당시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회장 : 도춘호 (2017년 12월 31일)

부회장: 이대수 (2017년 12월 31일)

감사 : 허정림 (2017년 12월 31일)

감사 : 김순식 (2017년 12월 31일)

총무 : 김상헌 (2017년 12월 31일)

이사 : 박현길 (2017년 12월 31일)

이사 : 김학길 (2017년 12월 31일)

제4조 (정관의 시행)

본 연구회의 정관은 감독 기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끝>